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2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4885 압류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5. 3. 18. 선고 2014구합2135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7. 24.
판 결 선 고	2015. 8. 1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03. 11. 3.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관리번호 B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2

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사공영진

판사 장 래 아

판사 정 한 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2

[별지]

목록

1. 자동차 등록번호 : C

1. 형식승인번호 : A04-1-00002-0003-1203

1. 차명 : SM3

1. 차종 : 승용 중형

1. 차대 번호 : D

1. 원동기 형식 : QG15

1. 등록 연월일 : 2003. 9. 27.

1. 최종 소유자 : 원고

1. 사용 본거지 : 세종특별자치시 E, 6호 <끝>